



“산업폐자원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”
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
Korea Industrial Waste-Resources Mutual-aid Association



수신자 조합원사 및 매립회원사 대표이사 [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]
(경유)

제 목 「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」 관련 고시(안)
재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(긴급)

1. 공제조합 2015-319[‘15.7.7, ‘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’ 관련 고시 개정(안)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(긴급)] 관련입니다.

2. 환경부에서 ‘15.7.1 행정예고한 「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」 관련 고시(안)에 대해 우리 조합을 비롯한 수 많은 전문가, 교수들이 건의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동 건의의견들을 반영하여 대폭 수정된 고시(안)을 ‘15.11.9까지 재행정예고함에 따라,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긴급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불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‘15.11.9(월)까지 조합(FAX : 02-718-7171)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「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(안)은 조합 및 협회 홈페이지(알림광장-공지사항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붙임 1. ‘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’ 추가 관련 고시(안) 재행정 예고 주요내용 및 조합 검토 의견 1부.
2. 유기성오니 폐석산 채움재 시범사업 재고시(안) 비교표 1부
3.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. 끝.

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이사장



담당자 박병호 팀장 김진오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웅
협조자

시행 한공조 2015 - 532호 (2015. 11. 5) 접수
우 157-7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(등촌동) 우리벤처타운 11층 / www.kiwrma.or.kr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iwrma@kiwrma.or.kr / 비공개

‘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’ 추가 관련 고시(안) 재행정예고 주요내용 및 조합 검토 의견

1 환경부 고시 개정(안)

- 가. 하수처리오니(월2회) 및 고화처리물(월1회) 기준 적합여부 검사 기간 명시
나. 고화제 폐기물 종류(폐석회, 석탄재, 제지슬러지 비산재, 슬래그) 및 검사 기간(월2회) 명시
다. 시범사업 신청자 제출서류 구체적 명시(시범사업 기간, 대상지역, 고화처리 물 사용계획, 환경영향 조사·평가 계획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는 서류 등)
라.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 강화(사면이 암반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하수의 흐름이 없는 지역 중 1개소를 정하여 실시)
마. 채움현장 임시보관시설의 경우 벽면과 지붕을 갖추도록 강화
바. 우수와 고화처리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분리하여 석산복구지 외부로 배 수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침출수 월1회 이상 검사
사. 시범사업 진행사항 보고 기관 및 기간 명시
– 시범사업자(분기별) → 한국환경공단 주기적 모니터링(반기별) → 환경부
아. 시범사업이 승인내용과 다르거나 환경오염 발생 시 시범사업 승인 취소 및 즉시 원상복구 조치
자. 시범사업 종료 시 사업자가 사후관리 이행, 미이행시 원상복구 등 조치
차. 일몰조항 추가(시범사업 조항은 승인한 시범사업 기간까지 유효)

2 조합 검토의견

가. 시범사업 규모 명시 필요

- 시범사업으로 인한 환경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규모 명시 필요
 - 시범사업에 따른 석산복구지 용적 10,000m³ 이하

나. 침출수 차수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필요

- 동 시범사업 고시(안)에서도 하수처리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오염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, 하수처리오니 사용에 따른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차수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필요

다. 시범사업 관련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필요

- 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 종식 및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,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필요

유기성오니 폐석산 채움재 시범사업 再고시[안] 주요내용

1차 고시(안)에 대한 조합 건의의견	再행정예고 고시(안)	추가 건의의견(안)
1. 원료인 유기성오니 정기적 검사 필요	• 하수처리오니 월 2회 이상 기준 적합 여부 검사	
2. 유기성오니 고화처리물 정기적 검사 필요	• 고화처리물 월 1회 이상 기준 적합 여부 검사	
3. 고화제 폐기물 종류 제한 및 정기적 검사 필요	• 고화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석회, 석탄재, 제지슬러지 소각재 (비산재 한정), 슬래그 월 2회 이상 기준 적합여부 검사	
4. 악취 저감 방안 마련 필요	• 악취 또는 유해가스 저감시설 설치·운영	
5. 원상복구비용 사전 예치 필요	•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는 서류 제출	
6. 시범사업 지역 명확화 필요	• 사면이 암반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하수의 흐름이 없는 지역 중 1개소 실시	※ 시범사업 지역 용적 10,000m ³ 이하
7. 시범사업 기준 마련 필요	• 시범사업 계획서 세부내용 추가	
8. 임시보관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	• 채움현장에 벽면과 지붕을 갖춘 임시보관시설 설치·운영	
9.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필요	• 석산복구지 내에 흘러든 우수와 고화처리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분리 배출 시설 설치	※ 침출수 차수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명시 필요
10. 침출수 관리 방안 마련 필요	• 석산복구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월 1회 이상 검사	
11. 시범사업 환경평가 주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명시 필요	• 시범사업자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	
12. 시범사업 진행사항 분기별 보고 필요	•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	※ 시범사업 관련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명시 필요
13. 시범사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발생 시 즉시 사업 중단 명시 필요	•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발생 시 시범사업을 즉시 일시중지시키고, 시범사업이 원인일 경우 승인 취소 및 즉시 원상복구 등 조치 요구	
14.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일몰조항 필요	• 시범사업 관련 항목은 승인한 시범 사업 기간까지 유효	

붙임3

‘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’ 추가 관련 고시(안) 재행정예고에 대한 건의의견

재행정예고(안)	수정 건의(안)	사유

2015. 11.

업체명 :

담당자 :

연락처 :

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귀중